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. 3. 26 선고 2015가단33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3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원주시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원주시 C 대 178㎡를 인도하고,
다. 2014. 9. 25.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792,69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손주철

청구원인

1. 원고는 원주시 C 대 178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)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. 9. 25.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.
2.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매월 792,693원의 토지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.
3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2014. 9. 25.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792,693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목 록

원주시 C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 지붕 3층 단독주택

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90.24㎡

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4.1㎡

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가구 105.16㎡

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가구 56-82㎡

옥탑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(연면적제외) 13㎡. 끝.

